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시행 2010.11.26]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11.19, 일부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牛脂)
5. 식용 돈지(豚脂)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 ⑤ 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

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제5조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 2제3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麻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

록으로 판정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말한다.

1.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2. 제21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3.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닭의 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제13조의2(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수산물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여부 확인

6.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7.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8. 영업장 시설의 검사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10.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11.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2.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3.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14.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15.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축산물의 검사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 9.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도축장 및 집유장을 말한다.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검사원의 자격·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해진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 5.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24시간 이상
-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 1. 강사수당
- 2. 교육교재 편찬비
-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수입축산물의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완료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 2.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서 수입신고인이 통관 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해당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수입·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이란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한

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점검·지도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4. 법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축산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폐기
6. 그 밖에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등 법령에 따른 의무행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지도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압류·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

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일반 해당하는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냉장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제26조의3(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26조의4(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평가의 대상

-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 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 라.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나. 축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나. 위해평가는 검역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검역원장이 부담한다.
- 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

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같음할 수 있다.

② 위해평가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축산물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성분규격 및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한시적 인정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에 관한 규격 등의 고시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의 고시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7.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등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8.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에 대한 출입·조사

9.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기준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0.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와 통보, 이의신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 중 검역원 소속 공무원의 검사관 임명
1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신고수리·검사 및 국내의 검사기관의 인정
13.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결과와 수출입 실적 등의 보고 및 검사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수거명령
14.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지정을 포함한다), 지정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명령
15.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과 이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시
16.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수리
1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18.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19.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20.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계획·회수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2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2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및 위해 여부 결정
23. 법 제34조에 따른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접수
24.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 25.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회수 명령
- 26.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 2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28.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 2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 30.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31.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
- 3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33.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고시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기준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4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명째부터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닭(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닭의 기준을 적용받는 가금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업무량은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2년 11월 25일까지는 3만수로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II. 제4호나목·제8호나목·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제17조의2 관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2만수 이하
-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4만수 이하
-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6만수 이하로 하 되,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2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 5)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책임수의사는 검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연간 90일 이내로 한정한다)에는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1명당 4만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준 업무량의 100분의 150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구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소	1두~30두	1명 이상
		31두~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300두	1명 이상
		301두~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닭	1수~20,000수	1명 이상
		20,001~40,000수	2명 이상
		40,001수 이상	3명 이상
집유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3. 그 밖의 기준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 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물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소각매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나.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 (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같은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같은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같은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의 전부정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전부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		20 이하		5
2		20 초과 ~ 30 이하		8
3	10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100 이하	12
4	100 초과 ~ 20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
5	200 초과 ~ 31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28
6	310 초과 ~ 430 이하	150 초과 ~ 21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36
7	430 초과 ~ 560 이하	210 초과 ~ 27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44
8	560 초과 ~ 700 이하	270 초과 ~ 33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52
9	700 초과 ~ 860 이하	330 초과 ~ 40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60
10	860 초과 ~ 1,040 이하	400 초과 ~ 47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68
11	1,040 초과 ~ 1,240 이하	470 초과 ~ 550 이하	950 초과 ~ 1,100 이하	76
12	1,240 초과 ~ 1,460 이하	550 초과 ~ 650 이하	1,100 초과 ~ 1,300 이하	82
13	1,460 초과 ~ 1,710 이하	650 초과 ~ 750 이하	1,300 초과 ~ 1,500 이하	88
14	1,710 초과 ~ 2,000 이하	750 초과 ~ 850 이하	1,500 초과 ~ 1,700 이하	94
15	2,000 초과 ~ 2,300 이하	850 초과 ~ 1,000 이하	1,700 초과 ~ 2,000 이하	100
16	2,300 초과 ~ 2,600 이하	1,000 초과 ~ 1,200 이하	2,000 초과 ~ 2,300 이하	106
17	2,600 초과 ~ 3,000 이하	1,200 초과 ~ 1,500 이하	2,300 초과 ~ 2,700 이하	112
18	3,000 초과 ~ 3,400 이하	1,500 초과 ~ 2,000 이하	2,700 초과 ~ 3,100 이하	118
19	3,400 초과 ~ 3,800 이하	2,000 초과 ~ 2,500 이하	3,100 초과 ~ 3,600 이하	124
20	3,800 초과 ~ 4,300 이하	2,500 초과 ~ 3,000 이하	3,600 초과 ~ 4,100 이하	130
21	4,300 초과 ~ 4,800 이하	3,000 초과 ~ 4,000 이하	4,100 초과 ~ 4,700 이하	136
22	4,800 초과 ~ 5,400 이하	4,000 초과 ~ 5,000 이하	4,700 초과 ~ 5,300 이하	142
23	5,400 초과 ~ 6,000 이하	5,000 초과 ~ 6,500 이하	5,300 초과 ~ 6,000 이하	148
24	6,000 초과 ~ 6,700 이하	6,500 초과 ~ 8,000 이하	6,000 초과 ~ 6,700 이하	154
25	6,700 초과 ~ 7,500 이하	8,000 초과 ~ 10,000 이하	6,700 초과 ~ 7,400 이하	160
26	7,500 초과 ~ 8,600 이하	10,000 초과	7,400 초과 ~ 8,200 이하	166
27	8,600 초과 ~ 10,000 이하		8,200 초과 ~ 9,000 이하	172
28	10,000 초과 ~ 12,000 이하		9,000 초과 ~ 10,000 이하	178
29	12,000 초과 ~ 15,000 이하		10,000 초과 ~ 11,000 이하	184
30	15,000 초과 ~ 20,000 이하		11,000 초과 ~ 12,000 이하	190
31	20,000 초과 ~ 25,000 이하		12,000 초과 ~ 13,000 이하	196
32	25,000 초과 ~ 30,000 이하		13,000 초과 ~ 15,000 이하	202
33	30,000 초과 ~ 35,000 이하		15,000 초과 ~ 17,000 이하	208
34	35,000 초과 ~ 40,000 이하		17,000 초과 ~ 20,000 이하	214
35	40,000 초과		20,000 초과	220

별표 3의 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재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20만원 이하
2.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30만원 이하
6.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만원 이하

비 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고발 또는 검거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I. 일반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II.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00
2.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3.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4.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
다. 그 밖의 영업자		300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다. 그 밖의 영업자	법 제47조 제1항제4호	300 200 50
6.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0
7.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500
8.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가. 도축업의 영업자 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다.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법 제47조 제2항제1호	300 200 200 100
9.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20
10.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0
1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20 100
13.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6호	50 30 30 20 100
14. 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로서 가.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법 제47조 제2항제7호	20 10
15.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
16.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
17.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50
18.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19.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
20.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
21.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50